

#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이용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6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예산제의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자 합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·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(안 제6조),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(제6조제1항~2항, 제7조~제9조)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